

2005. 9. 2(금) 11 : 30

제20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 제1차회의

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 
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의회운영위원회**

#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05. 8. 30.
- 나. 발 의 자 : 신주범 의원 외 6인
- 다. 회부일자 : 2005. 8. 31.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46호

## 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### 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이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함(2005. 8. 5)에 따라 본 조례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상위 법령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골자

- 거창군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인상함(안 제6조 제2항)
  - 제6조(의정활동·회의수당지급기준) 제2항을 “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,000원을 지급한다”로 함.
- 기타 제명 및 자구 등을 적합하게 정정함.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
- 다만, 현재 회기수당이 1일 70,000원으로 72,8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, 100,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14,040천원이 부족하여 추경시 예산확보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.